

#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번호	제 909 호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5.

제 출 자 : 충청남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「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기금 운용액 : 금144,458,936천원
- 기금 운용 변경액 : 금64,160,000천원
- 주요변경 사유 :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 경		기 정		증 감	
	예산안	구성비	예산안	구성비	금액	%
합 계	144,458,936	100%	80,298,936	100%	64,160,000	100%
기 금 (2개)	144,458,936	100%	80,298,936	100%	64,160,000	100%
교육재정안정화기금	64,160,000	44%	-	0%	64,160,000	100%
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	80,298,936	56%	80,298,936	100%	-	0%

## 3. 참고사항

- (붙임)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#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

## I 기금운용 총칙

### 1 기금설치 개요

#### □ 근거

- ▶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」
- ▶ 「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## □ 목적

- ▶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
- ▶ 설치년도: 2020년도 ※ 존속기한: 2024. 12. 31.까지

### 2 기금운용 기본방향

#### □ 기금사업의 목표

- ▶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영 도모
- ▶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<sup>1)</sup>를 내재한 사업추진

1) 경제·사회·환경·문화 등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

□ 2020년 기금사업 개요

- ▶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·관리

□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

- ▶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금명	'19년도말 조성액(a)	'20년도 기금운용계획		'20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용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 조성규모 (f=d+e)
		조성계획(b)	지출계획(c)			
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		64,160,000	-	64,160,000		64,160,000

- ▶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: 천원)

기금재원별	'19년도말 조성액(a)	'20년도 기금운용계획		'20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용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 조성규모 (f=d+e)
		조성계획(b)	지출계획(c)			
합 계		64,160,000	-	64,160,000		64,160,000
교특회계전입금		64,160,000	-	64,160,000		64,160,000

- ▶ 기금 용도(지원 대상)

-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
-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- 임대형민자사업(BTL)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
-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개축, 교육행정기관 신설·이전·증축·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-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우

- ▶ 지원기준 및 계획: 지원계획 없음

## □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

(단위: 천원)

자산구분	'18년말 잔액	'19년 계획			'20년 계획안			증감 (b-a)
		신규	처분	잔액(a)	신규	처분	잔액(b)	
합계					64,160,000	-	64,160,000	64,160,000
금융자산					64,160,000	-	64,160,000	64,160,000
예치금					64,160,000	-	64,160,000	64,160,000

## □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: 해당없음

## II 자금 운용 계획

### 1 수입·지출 총괄표

(단위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수입항목	'20년 수입액	'19년 수입액	증감	지출항목	'20년 지출액	'19년 지출액	증감
합계	64,160,000		64,160,000	합계	64,160,000		64,160,000
교특회계 전입금	64,160,000		64,160,000	예치금	64,160,000		64,160,000

### 2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수입과목		산출기초	'20년 수입액 (A)	'19년 수입액 (B)	증감 (A-B)
장관항	목				
보전수입 등 내부거래			64,160,000		64,160,000
	내부거래		64,160,000		64,160,000
	전입금		64,160,000		64,160,000
	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	64,160,000,000원×1회=	64,160,000		64,160,000
수입합계			64,160,000		64,160,000

### 3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지 출 과 목					산출기초	'20년 지출액 (A)	'19년 지출액 (B)	증감 (A-B)
정책	단위	세부	세세부	목-산출내역				
교육행정일반						64,160,000		64,160,000
	예결산관리					64,160,000		64,160,000
		예산관리				64,160,000		64,160,000
			기금관리			64,160,000		64,160,000
				예치금	64,160,000,000원×1회=	64,160,000		64,160,000
지 출 합 계						64,160,000		64,160,000

### III 성인지 기금운용계획

‘해당없음’

### IV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

####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도별	조성액			집행액						잔액 (a-b)
	계 (a)	교 특 전 입 금	이 자 수 입	계 (b)	비 용 자 성 사 업 비	용 자 성 사 업 비	인 력 운 영 비	기 본 경 비	기 타 지 출	
2019										
2020	64,160,000	64,160,000	-	-	-	-	-	-	-	64,160,000
계	64,160,000	64,160,000	-	-	-	-	-	-	-	64,160,000

## 2 예치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예치은행	'18년도말 현재액	'19년도말 현재액(a)	'20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비고
합계			64,160,000	64,160,000	
농협은행			64,160,000	64,160,000	

## 관련 법규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(기금의 조성)

-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1.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
  2. 기금운용수익금
 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충청남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  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 라 한다)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  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